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85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ol ol m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	78 H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170호)	김현의원	2024.6.5.	 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4.6.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 후 소위회부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에상정 및 축조심사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상정 및 축조심사 상정 및 축조심사 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181호)	최민희의원	2024.6.7.	 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4.6.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 후 소위회부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에 상정 및 축조심사 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 상정 및 축조심사 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최민희의원	2024.6.10.	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 체회의(2024.6.21.) 상정 후 제안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229호)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7.16.) 상정 후 소위회부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 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에 상정 및 축조심사 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 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398호)	김승수의원	2024.6.12.	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4.6.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 후 소위회부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에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451호)	신장식의원	2024.6.13.	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4.6.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 후 소위회부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에상정 및 축조심사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902호)	이해민의원	2024.6.25.	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 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 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에

			상정 및 축조심사
			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
			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황운하의원	2024.8.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	02112	2021.0.1.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5.)
(제220248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w [그렇붜] 레EO크레4회사] 메리
관한 법률	한민수의원	2024.11.4.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5.)
(제220522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0004100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2.23.)
관한 법률	황정아의원	2024.12.2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일부개정법률안		0.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
(제2206796호)			상정 및 축조심사

- 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 1. 6.)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 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 6.)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를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 1항에 따른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3.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 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 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⑦ 심의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 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	②
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	
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u>제1</u>	<u>국회</u>
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	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에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	야 한다
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	
인을 추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하
	지 않는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
	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u>본다.</u>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②
는 결원된 날부터 <u>지체 없이</u>	<u>30일</u>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생 략)

- 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⑦ (생 략)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성폭</u>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 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 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 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 당하는 내용의 정보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3. 「형법」, 「사행행위 등 규 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 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 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의 정보
-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
 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신 설>

<신 설>

⑤ (생략)

<신 설>

<신 설>

⑥·⑦(생략)

-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 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 는 내용의 정보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공개되는 회 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 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8· <u>9</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